

#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

## ◎ 정무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원안, 김병욱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,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함.</li> <li>○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래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 대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됨.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2	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마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입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소 자기자본(5억원), 인적·물적 설비, 임원·대주주,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영업행위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2P업체 정보공시,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, 자기자금 대출 제한적 허용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투자자 보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자자 정보제공, 투자금 분리보관, 손해배상, 대출·투자한도 설정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,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</li> </ul>
3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(主)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순위 부모 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(主)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</li> <li>○ 동순위 부모 유족 중 감면진료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 유족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유공자의 부모 유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( '18.6.28.)을 반영하여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할 수 있음</li> </ul>
4	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(主)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순위 부모 유족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(主)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유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( '18.6.28.)을 반영하고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을 강화할 수 있음</li> </ul>

## ◎ 교육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수정, 서영교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p>○ 초등학교, 중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교육에도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.</p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p>○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0년 고등학교 2, 3학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,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함.</li> <li>-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p>○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.</p>
2	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수정, 조승래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p>○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, 유아 및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</p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p>○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.</p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p>○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, 유아 및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</p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3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」(대안, 교육위원장 제안)	<p><b>□ 제정취지</b></p> <p>○최근 각종 재난, 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</p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p>○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</p> <p>○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·시행,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설치, 교육시설 안전·유지관리기준 및 안전점검 실시, 교육감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,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</p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p>○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</p> <p>○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체계적·총체적으로 지원</p>

## ◎ 기획재정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및 이의신청 대상 추가,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조건 신설 등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의 공정성 확보, 계약금액 적정화</li> </ul>
2	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·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,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·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,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신설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유재산특례 신설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의 부담 완화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3	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 개선 필요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,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금체불,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 예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불방지효과, 대금지급시기 단축 및 대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하도급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하는데 기여</li> </ul> </li> </ul>
4	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원안, 정부제출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참여와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강화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 및 출자근거를 마련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미경제통합은행을 활용하여 중미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미지역 투자 경험이 많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을 활용하여, 우리 기업의 투자리스크와 경험 부족 등을 보완</li> <li>- 회원국에 유리한 조달시장 요건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중미시장진출</li> <li>- 한국전문인력의 중미 국제기구 진출 창구로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

## ◎ 국방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원안, 백승주의원 대표발의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함.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·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 등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,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진상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</li> </ul>
2	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부터 제3종 구역까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함.</li> <li>○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</li> <li>○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영향 방지·저감을 위해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</li> <li>○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,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.</li> </ul>

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</li> <li>○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</li> </ul>

## ◎ 행정안전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강화,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 방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자 보유주식의 관리 강화(안 제4조제3항제7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등록하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직자의 재산심사 강화(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안 제8조제13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·취득경위·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,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.</li> <li>-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(안 제14조의15 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기관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방위산업 분야 등의 취업제한기관 추가(안 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)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·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고,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</li> </ul>
2	「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공기업 현행 운영상 제도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함.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공기업 운영상 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공기업과 같이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추가</li> <li>-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 조사·심사 등을 거친 사업 등은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예방·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·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·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 등</li> </ul> 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공기업 운영상 효율성 강화 및 채용비리에 따른 공정성 저해 예방</li> </ul>
3	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·출연기관의 현행 운영상 제도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함.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상 제도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출자·출연한 경우에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것으로 보도록 함.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결격사유 강화 및 영리목적 겸직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.</li> <li>-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.</li> </ul> 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 예방·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·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·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할 수 있도록 함 등</li> </ul> </li> <li>□ 기대효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 및 채용비리에 따른 공정성 저해 예방</li> </ul> </li> </ul>
4	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개정취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제 합리화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법률에 명시</li> <li>○ 현행법 문언이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법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</li> </ul> </li> <li>□ 주요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.</li> <li>○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함.</li> </ul> </li> <li>□ 기대효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</li> <li>○ 입법정비를 통해 법 조문을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</li> </ul> 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5	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개정함.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범죄, 횡령·배임죄를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.</li> <li>○ 파산선고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을 정비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차이를 정비</li> <li>○ 성범죄, 횡령·배임죄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 행위 예방</li> </ul>
6	「주민등록법」 일부개정법률안 (수정안, 정부제출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등록제도 및 관련 행정 운영에 정확성 도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군·구청장의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청장에 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의무 부과</li> <li>- 시·군·구청장에게 관계 행정기관 등에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권한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원활한 집행 기대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7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개정취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</li> </ul> </li> <li>□ 주요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</li> <li>○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</li> </ul> </li> <li>□ 기대효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</li> </ul> </li> </ul>

## ◎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연번	안 건	주요 내용
1	「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상·증강현실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</li> <li>○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방만한 경영, 불투명한 저작권료 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상·증강현실 기술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</li> <li>○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강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 신설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상·증강현실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,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저작권료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</li> </ul>
2	「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제기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</li> <li>○ 관광특구 지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 <p><small>*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,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·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함.</small></p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‘특별관리지역’으로 지정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근거 마련</li> <li>○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, 방문객의 편의시설 범위에 교통주차시설을 추가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및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</li> <li>○ 관광특구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</li> </ul>

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3	「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의 구두계약 관행 근절 및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</li> <li>○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방안 마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용역계약시 서면계약서 미체결에 대한 행정조사권 및 시정명령권 신설</li> <li>○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예술용역계약 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</li> </ul>
4	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(이동섭의원)	<p>□ 개정취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제도 마련</li> </ul>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특히 기여한 자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</li> <li>○ 태권도대사범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</li> </ul>

## ◎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수정, 김현권의원 대표 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제사회에서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legal,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: IUU)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추세에 대응</li> <li>○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강화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양어선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허가 제한</li> <li>○ 불법·비보고·비규제(IUU) 어업의 근절을 위하여 과징금 규정 도입</li> <li>○ 원양어업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조기 해제,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의 투명성 제고</li> </ul>
2	「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간 산림 보전·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, 산림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·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 교류 및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 근거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산림기본계획 국회 제출·공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3	「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대안)	<p>□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,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조사 등 의무화,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 판매 제한 등을 규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 유지</li> </ul> <p>□ 기대효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는 신·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산림경관 보전, 지역 주민 불만 해소, 국민안전 제고</li> </ul>

## ◎ 보건복지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효율적인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,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없도록 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.</li> <li>○대다수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, 교육 강화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.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.</li> <li>○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이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</li> <li>○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.</li> <li>○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향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, 마약류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2	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위해가 가해지는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</li> <li>○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,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</li> <li>○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</li> </ul>
3	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흡연자가 적극적으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, 부과 받은 과태료를 감면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고소득층 대비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, 흡연자의 금연교육 이수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</li> <li>- 금연교육·금연지원서비스와 과태료라는 금연정책 수단간 연계를 강화하여 금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4	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수정, 신보라의원 대표발의)	<p>□ 개정취지</p> <p>○난임 여성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</p> <p>□ 주요내용</p> <p>○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‘난임의 예방 및 관리’ 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</p> <p>- 특히,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</p> <p>□ 기대효과</p> <p>○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운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</p>
5	「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□ 개정취지</p> <p>○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채 변동 사항 파악 등이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,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·임차(전·월세)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.</p> <p>□ 주요내용</p> <p>○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.</p> <p>□ 기대효과</p> <p>○대출을 받아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·임차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실제 부담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.</p>

## ◎ 환경노동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수정, 신창현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중 발생하는 석면의 비산정도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측정기관이 측정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가 아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에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위탁하도록 함</li> <li>○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·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측정기관이 작업 중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석면해체·제거 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</li> </ul>
2	「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, 김태년·김동철·신창현·손금주·윤상현·우원식·송옥주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하는데, 해당 업무를 위탁하면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함</li> <li>○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		<p>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업무 위탁 시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토록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</li> </ul>
3	「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, 이장우·임이자(2건)의원 대표발의/정부제출(2건)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</li> <li>○ 절수설비의 부속품을 임의로 조작하여 물 사용량을 늘리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,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</li> <li>○ 절수설비 제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</li> <li>○ 절수설비의 내부 구조 및 규격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부속품의 임의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</li> </ul>

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4	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, 한정애(2건)·전현희·변재일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·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책임자 범위를 확대함</li> <li>○ 부적정처리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·원상회복 소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함</li> <li>○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별도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</li> <li>○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신설,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, 실제 발생하더라도 처리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5	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대안, 서형수의원, 홍영표의원, 이장우의원, 김도읍의원, 김상훈의원, 박주민의원, 김동철의원 대표발의, 정부 제출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함</li> <li>○ 건설근로자를 경력, 자격,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·관리하도록 함</li> <li>○ 도급인이 사업주와 합의하거나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함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금의 구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예방</li> <li>○ 기능별 구분·관리를 통하여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</li> <li>○ 하수급인 파산·도급인의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공제부금 미납부 예방</li> </ul>

## ◎ 국토교통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주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은 주택지구의 50%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나,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○ 예외적 전매 허용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의무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매입하도록 의무를 부여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‘분양가 상한제’가 적용되어 주변 주택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음.</li> <li>-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주택이 실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허용 시에도 시세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투기 우려 저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가 납부한 비용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시세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/ul>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2	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	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.</li> </ul> </li> <li>○ 스마트 실증사업 및 스마트 혁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</li> <li>- 지구 내 규제 특례를 통해 스마트실증사업(혁신적인 기술·서비스의 실증) 또는 스마트혁신사업(혁신적인 기술·서비스의 사업화)을 할 수 있도록 심의 및 승인 기준, 관리방안 등을 규정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스마트 신기술·서비스가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는 실증과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마트규제혁신지구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</li> <li>-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신기술·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요구되나,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현행 법령의 규제를 신기술·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적용할 규제의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.</li> </ul> </li> </ul>
3	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수정안, 강훈식의원 대표발의)	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자도로 운영기간 경과 후 통행료 징수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용 투입 시 비용회수를 위한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사업 재구조화,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,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</li> <li>- 한국도로공사 등이 자체 재원을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목적으로 비용을 투입하고,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 근거 마련</li> </ul> </li> </ul>

## ◎ 여성가족위원회

연번	안 건	주 요 내 용
1	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	<p><b>□ 개정취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추가함.</li> </ul> <p><b>□ 주요내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함.</li> <li>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성범죄자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되도록 함.</li> <li>-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.</li> </ul> <p><b>□ 기대효과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하여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를 강화함.</li> </ul>